



■ 권 두 칼 럼

해외 교류협력의 초석을 놓으며

치안정책연구소장 치안감 김길배



경찰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찰의 나이도 벌써 이순(耳順)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외치고 또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애쓰는 만큼이나 변화를 향한 목마름은 아직 그칠 줄 모릅니다.

그간 경찰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 경찰활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역량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고, 이에 연구 전문인력의 확충과 국내외 교류협력 확대 등 연구운영 인프라의 발전적 재편을 통해 치안정책연구소가 시대흐름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흐름을 창조해 나가는 경찰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매주 개최되는 「책임연구과제 발표회」는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관들이 작성, 제출하는 장·단편 보고서를 동료 연구관, 교수, 경찰청의 실무담당자를 상대로 발표하고 검토, 토론함으로써 현장에 보다 적합하고 시의성 있는 결과물의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일부 용역 연구과제 역시 국외의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하는 등 기존의 연구운영 패러다임에서 탈피코자 역발상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류협력의 외연을 넓혀 지난 9월말에는 독일 한스 자이델 재단(Hanns-Seidel-Stiftung)과 실질적인 교류협력방안을 뮌헨(München) 현지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용역연구과제 수행자인 슈파이어(Speyer) 행정대학원 라이너 피차스 교수와의 연구회의 일정과 더불어 진행되었는데 슈파이어에서의 연구회의를 통

해 독일 역시 경찰과 검찰 양 기관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우리와 달리 경찰이 법 현실에 있어 사실상의 수사주재자(faktische Herrin des Ermittlungsverfahren)로 지칭되고, 경찰의 인적, 기술적, 정보적 우위로 인해 수사주재자로서의 검찰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독일 검찰은 이를 우려하고 있고, 행정조직법적 관점에서의 기관관계 역시 우리와 같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남부 뮌헨에 위치한 한스 자이델 재단은 바이에른주 집권당인 CSU(기독교사회당)의 재정지원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재단운영에 있어서는 철저히 독립성을 유지하는 독일의 3대 정치재단중 하나로서, 독일 통일의 경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과의 논의를 통해 첫째, 연구소 연구관의 독일연수 프로그램 시행(3개월, 재단측 전액지원) 둘째, 국제학술세미나 공동개최 셋째, 경찰대학 또는 연구소내 원어강좌 개설 넷째, 도서 및 연구자료 공유 등 양 기관간 실질적 교류협력을 위한 프로젝트를 즉각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경찰의 백년대계는 연구역량의 강화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금번 독일방문의 성과는 경찰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임이 분명합니다.

훌륭한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에 불과하듯이 오늘의 정성과 노력이 경찰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PSI**

■ **응역연구과제 논문요약**

국민참여재판과 경찰관 법정증언제도

한 인 섭/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입 법, 행정과 더불어 사법에의 국민참여를 열망하던 의견이 반영되어 2007년 국회를 거쳐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었다. 조서를 중심으로 하던 이전의 재판방식을 벗어나 배심원이 출석한 법정을 중심으로 모든 심리가 진행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사법기관은 새로운 재판방식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법원, 검찰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조서와 자백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오던 경찰의 수사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된다. 새로운 재판방식에는 유죄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에 맞는 수사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의 가장 큰 변화는 조서에 담아내던 수사내용을 법정에서 배심원과 법관을 대상으로 한 증언형식으로 현출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 앞으로의 수사는 법정에서의 증언을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보더라도 경찰관 법정증언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실제 배심제가 확립된 영미국가에서의 경찰관 법정증언은 필수적·일상적 절차이고, 참심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도 이는 실제적 진실발견에 필요한 절차이다. 더욱이 미국의 판례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증인적격까지 인정한 경우가 있다. 또한 배심원과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는 사건 현장의 생생한 표현과 피의자 수사과정에서의 목격담을 증언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발견에 관한 배심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찰관은 자신들의 수사내용과 이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증언의 태도와 증언의 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경찰관이 증언을 하게 되는 유형은 현장에서의 초동수사자의 증언, 조사경찰관의 피의자진술에 대한 증언,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로서의 증언으로 나눌 수 있다.

증언 전 증언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증거법에 대한 사전숙지, 해당 사건에 대한 지식, 예상질문 및 답변에 대한 준비 등이다. 변호사의 반대신문은 수사내용과 증언의 신빙성을 깨기 위한 식으로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실제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답변이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사안별로 준비해야 한다. 실제 법정에서는 용모와 옷차림을 단정히 해야 하고, 증언의 태도는 진지하여야 하며, 배심원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여야 한다.

특히 범문상 조사자 증언 뿐 아니라 조서의 증거능력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정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서류를 참조해야 되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공판 전 검사와 함께 증거와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좋으나, 검사가 독자적으로 한 보강수사의 내용까지 면담하는 것은 전문법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 같은 이유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참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이 작성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조사자증언제도의 입법취지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근거한 증언은 신빙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조사자증언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증언제도의 꽃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며 필수적인 제도이다. 경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언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여 효과적인 수사와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PSI**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연구

백 창 현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일 반적으로 경찰의 목적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위험과 장애)의 방지 및 제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장애를 배제하는 것이 경찰의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고 한다)에서도 제2조 제5호에서 경찰의 직무의 범위중의 하나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하여 경찰의 목적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방지와 제거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의 목적달성을 위한 경찰의 임무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경직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들은 주로 개인에게 명령·강제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권력적·침익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치주의 내지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따라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찰권의 행사는 개별적인 작용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직법 규정의 대부분이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권한행사에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권 행사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장애를 제거하는 작용이므로 사전에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위해를 모두 예견하여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직법 제5조의 규정도 예외가 아니며, 따라서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의 경찰권 행사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 이의 해결을 위하여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험의 의미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직법상의 여러 가지 조치수단중 제5조, 제6조, 제7조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임무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직법상 위험은 장래 사실상황의 전개에 관련한 예측을 중심으로 하고 그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부가되지만 이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상황의 전개에 관련한 예측에 대하여 반드시 사후에 법원에 의한 사후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오늘날 경찰 위험은 과거와는 달리 피해의 광범위성, 대규모성으로 인하여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 등에 커다란 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경직법상 위험방지의 구체화 혹은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이로 인하여 경찰권 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우려도 없지 않지만, 이는 오랜 관례의 축적과 경찰권 이론의 발전으로 인한 경찰권 한계이론의 정치화 등으로 그 통제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특히 법원의 통제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커다란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찰의 적극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통하여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 등의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찰상의 위험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물론 경찰상 위험은 예측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령의 위반은 법익의 침해가 없더라도 위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교통법규의 위반은 그로 인하여 교통의 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위험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하여 초래될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오래되어 부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음식이 유통의 대상이 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험이 있는 것이 된다.

셋째, 가치 또는 법익의 감소를 가져오는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불이익 또는 부담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넷째, 손해는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먼 훗날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이른바 잠재적 장애(latente Störung)는 위험 또는 장애로 볼 수 없다.

다섯째, 예컨대 친구끼리 장난으로 칼싸움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진짜 싸움으로 판단한 경우 등은 외관상 위험으로서 위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예컨대 “촬영중 접근금지”라는 표지판을 옆에 세워놓고 살인극을 촬영중인데, 경찰관이 표지판을 보지 못하여 살인사건으로 오인한 경우 등은 오상의 위험으로서 위험에 속하지 않는다.

일곱째, 위험의 혐의도 위험으로 볼 수 있는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행 경직법의 관련된 규정들을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개괄수권조항과 직무범위의 구체적 명시, 개별적 수권조항의 수정보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개괄수권조항의 구체적 명시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개별법의 발전에 따라 경직법의 적용영역이 축소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장래 발생할 위험을 개별법 체제로 포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경직법상 개괄수권조항을 방기할 수 없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개괄수권조항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경직법 제2조 제5호 또는 제5조 등 여러 조항을 중심으로 개괄수권조항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집행에 있어서 직무규범이외에 권한규범의 존재를 요구하는 법치행정의 원리와 상충되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을 분리하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만이 개괄수권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사회와 개인의 보호의무를 다 할 수 있다. 개괄수권조항은 요건과 효과의 형식을 모두 갖춘 법규에 해당하고 아울러 위험의 포괄성과 함께 효과로서 필요한 위험방지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치국가의 원칙상 개괄수권조항의 내용·목적·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노력이 입법정책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필요하며 판례상으로도 끊임없이 요구된다.

오늘날 우리는 고도의 위험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따라서 경찰의 위험방지작용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가고 있음은 부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며 그 개개 구성원으로서 집행기관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의 중요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가기관의 권한이 강화되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질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아울러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양자의 조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SI**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과 보호대책 연구

유지웅 연구관/사회학박사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경찰청 가출청소년 통계자료와 전국적 규모의 표본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전국 중고교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조사 대상자의 10.9%가 실제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청에서 집계한 가출청소년 통계로 볼 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성별 가출청소년 발생 추세는 일관되게 여자 가출청소년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가출청소년 발생 통계에서 여자 가출청소년의 구성비는 63%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표집조사의 성별 분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연령층별 비율을 살펴보면, 1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15세 미만은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별히 12세부터 14세까지의 연령층에서 가출의 증가가 뚜렷하다. 가출 발생의 저연령화는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소년 가출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충동적·일시적 가출이 만성적 가출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가출은 흡연 및 음주와 같은 지위비행을 수반하며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경험을 높인다. 최근에 이뤄진 조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의 흡연율은 50%를 넘어서며, 음주율은 65%~8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은 일반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가출청소년의 이용경험이 높은 유해업소는 만화방, 화상채팅노래방, 카페, 호프방/소주방, 나이트클럽 등이다.

가출과 비행의 관련성에 관한 여러 조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거의 모든 비행 유형에서 가출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을 범죄와 관련하여 이해할 때, 피해자라기보다는 가해자라는 인식이 지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가출청소년들은 범죄의 피해자로서 존재하는 측면이 있다. 가출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과 소외, 성추행의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가출청소년의 30~40%가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다. 가출청소년들은 대개가 불안정한 장소에서 잠자리를 해결하는 가운데 광범위하게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에 놓여 있다. 가출청소년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더러는 업주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폭행과 구타, 성희롱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청소년의 비행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가정해체와 사회해체의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출청소년이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그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혹은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이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청소년 쉼터의 역할은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비행과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 쉼터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 개선대책>

가출청소년들 가운데 청소년보호시설의 보호를 받

고 있는 경우는 일부이다. 대다수의 가출청소년은 여전히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일시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 일시쉼터는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서 간단한 의약품, 세탁시설, 샤워시설, 간단한 음식 등을 갖추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쉼터의 양적 확대와 함께 기능적 특성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단기 청소년 쉼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쉼터의 수는 양적으로 크게 부족하다. 청소년 쉼터의 양적 확대에는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 등 기간별로 균형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 쉼터의 확대는 단기 쉼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한편, 청소년 쉼터의 확대는 단순한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기능적 특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가출청소년 관련 법 제도 개선 대책>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가출 신고 및 접수 업무의 통합과 가출청소년 관련 제반 정보와 서비스의 통합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출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을 돕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찰차원의 대책>

가출청소년 ‘안전보호지역’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비디오방, 노래방, 피시방, 오락실 등의 유흥업소에서 보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업소들을 가출청소년 조기발견과 보호시설 연계의 매개 공간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이러한 업소들을 청소년 보호업소로 지정하고, 가출청소년들이 가출청소년통합지원센터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안전보호소 프로젝트’는 가출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업소들, 예컨대 피시방, 찜질방, 비디오방, 편의점, 오락실, 노래방 등의 업소와 경찰이 연계하여 가출청소

년을 조기 발견하고 가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가 있다. 경찰의 유해환경 정화활동 및 각종 단속활동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경찰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가출청소년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근접성은 가출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근접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출소년년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중요하다.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찰 이미지 조사결과는 가출청소년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에 일정한 변화를 요구한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출청소년이 경찰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다. 즉, 가출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보호해 주는 수호자와 같은 경찰의 이미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경찰의 활동이 요구된다. 가출청소년의 비행 예방하는 대책은 무엇보다도 가출청소년들을 부정적 사회경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가출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사회경험을 차단한다는 것은 바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가출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은 가출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한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며, 거리에서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출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 제6호 당첨자 : 강철하

전자우편주소

- 인터넷: webmaster@psi.go.kr
- 내부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보내실 내용

- 이름,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관한 고찰

김 윤 영 연구관/문학박사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7년 8월 24일 현재 한국인구(주민등록인구 4천913만명)의 2%에 해당되는 100만명(100만 254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현상,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입국간소화 조치 등으로 동남아 저소득 국가 중심의 외국인 취업자들이 코리아드림을 안고 대량 입국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취업자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비가 비교적 싼 대도시 주변과 주요 산업단지·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거주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도 했으나, 취약한 국내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강력범죄와 조직폭력범죄, 국제범죄조직과의 연계 등에 의한 외국인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주로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되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 의해 갈수록 흉포화(凶暴化)·지능화·광역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1~6월) 외국인 범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29.3) 가까이 늘어났다. 금년 상반기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8천541명으로, 이중 17%인 1천416명이 불법체류자이다. 외국인 범죄자 8천541명은 2006년 상반기 검거된 6천606명에 비해 29.3%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검거 인원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 종류별로는 마약류 사건이 지난해 동기간 58건에서 올해 204건으로 무려 251.7% 급증했고, 폭력 사건도 1천535건에서 2천199건으로 43.3% 증가했다. 살인은 28건에서 35건으로, 지능범은 2천765건에서 3천266건으로 각각 25.0%, 18.1% 늘어났다. 특히 폭력과 지능 사범이 6천465명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밀집지역 내 폭행 사건과 공문서 위조를 통한 위장결혼 사건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강도(81건→53건)는 34.6%, 강간(37건→34건)은 8.1%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외국인 정책기조가 외국인 방문취업제 허용,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외국인 이민 허용정책 추진 등 개방과 인권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체류외국인은 더욱 증가될 것이고, 외국인 밀집지역은 문화·종교·인종간의 갈등 등으로 범죄발생지역으로 급부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05년 프랑스 이민자들(아랍계 저소득층 등)의 대규모 소요사태(2005.10.27-11.17 3주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집단화, 조직화, 정치세력화 등에 의한 집단저항이나 대규모 폭력시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먼저, 최근 외국의 범죄의 특징과 유형, 향후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사회적 기회박탈’, ‘상대적 빈곤’, ‘범죄 조직간의 주도권 분쟁’ 등은 외국인 범죄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외국인밀집 거주 지역의 범죄는 조직화, 전문화, 국제적인 범죄조직과의 연계, 초 국가화·광역화·기동화, 집단화와 정치세력화, 다양화, 흉포화, 지능화, 주거환경과 민족애·동료애로 인한 공범화 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외국인 범죄는 ‘출입국 관련 범죄’(각종 서류의 위조 및 부정취득 등), ‘국내 체류 중에 범하는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자의 범죄’(조직범죄, 국제범죄와 연계 등)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밀집지역이나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다인종·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불법체류자나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전락될 수 있다. △외국인범죄는 조직화, 전문화, 국제화, 국제범죄조직과 연계, 흉포화, 지능화, 공범화 되는 등 범죄유형과 국적이 다양화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상승되어 슬럼화가 촉진되고, 외국인 노동자의 납세기피 현상과 외화불법송금 등이 급증할 것이다. △한국사회 부적응 외국인 노동자나 2세 미성년자들의 사회일탈 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집단화, 조직화, 정치세력화로 집단저항이나 대규모 폭력시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국내 체류외국인의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외국인밀집지역 외사경찰 확충’, ‘지방청 외사수사과를 외사부로 확대 개편’, ‘경찰서 외사과 시범 운영 후 축차적 확대’, ‘1만명 이상 외국인밀집지역 외사계 신설’, ‘외국인 수사지원계(과) 신설’, ‘외국인밀집지역 광역경찰서(가칭) 재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소수민족 귀화인의 경찰관 특별채용 확대’, 귀화인 대상 ‘파트타임경찰제’(가칭) 도입, ‘귀화인 유급 정보원’과 소수민족출신 ‘연락관’ 채용 후 동일민족 외국인밀집지역 배치, ‘외국인밀집 및 범죄다발 지역 외사수사전담 요원 확충’, ‘선진국 수준 외사수사인력 확보’, ‘외사경과제 도입’, ‘외사전문수사관 해외 파견교육’, ‘민간 전문통역인 자격증’ 제도 확대, ‘경찰통역센터의 경찰통역관 확보’, 외국인 범죄사건에 대한 전문통역 ‘멘토’ 도입, ‘통역지원체계 구축’(교육기관, 외국어학원, 시민단체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센터 등), 통역인에게 ‘통역핸드북 배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축적된 외국인정보를 출입국현황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외사경찰이 외국인 동향조사권과 전속단속권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문제와 외교문제 등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범죄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설협의기

구’ 구성, 시민단체와 정부의 외국인지원정책 등에 범죄예방 프로그램 지원, ‘외국인 치안자문위원회’ 구성 등으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장·단기 국내 체류자들 모두와 불법체류율이 높은 산업기술연수생과 동남아·중동지역의 입국자에 대해서 연령과 체류기간에 제한 없이 지문날인토록 하여 외국인의 동일성 확인과 범죄경력을 관리해야하고, 유관기관과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외국인밀집지역 경찰서나 지구대에 외국인전용 ‘홈페이지’ 구축, 외국인밀집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구대나 파출소에 ‘외국인 쉼터’ 제공 등으로 경찰관과 유대감을 통한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의 국제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외국정보수사기관과의 정보교환과 협력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밀집거주지역(외국인 마을)’, ‘외국인거리’, 외국인 출입이 잦은 ‘유흥업소’, ‘외국인 범행대상 업소’ 등을 중심으로 ‘자치방범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치위원 또는 외국인 정보원과 합동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흥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절도와 폭력범이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외국인밀집거주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칭 ‘범죄예방상담소’ 운영, 외국인 우범지역 비디오 감시, 교통교육, 범죄역할연기와 퀴즈대회, 도보순찰강화로 경찰존재 과시, 교양악단 연주회 등의 ‘범죄예방문화행사(가칭)’ 등을 통해 가칭 ‘범죄 없는 거리(마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류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자진 귀국할 때, 그들은 스스로 친한파·지한파(知韓派)되어 지인들이나 이웃들에게 한국을 홍보하거나 한국제품을 소개·애용하고, 국가간 외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개자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의 홍보대사이자 잠재적 고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PSI](#)

■ 북한 경찰기관 소개

북한 경찰(인민보안성)의 조직체제 및 현황

유 동 열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북한경찰이 창설된 것은 소련군정 하에서 발족된 「북조선5도행정국」(1945.10.28) 산하의 보안국이 창설된 1945년 11월 19일 이다. 북한은 이날을 ‘사회안전기관창립일’로 기념하고 있는데, 당시 보안국은 경찰기능뿐만 아니라, 검찰, 재판소의 기능 및 대남공작업무까지도 겸하고 있는 막강한 사법,공안부서였다.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과 함께 경찰기능은 내각 소속인 내무성으로 흡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간 사회안전성(1951), 내무성(1952), 사회안전성(1962), 사회안전부(1972, 1973년 비밀경찰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사회안전부에서 독립), 사회안전성(1998)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0년 4월 6일 이래 현재의 ‘인민보안성’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① **북한경찰의 기능:** 북한경찰은 한국경찰과는 달리 수행하는 기능이 매우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 경찰은 기본적으로 ▶혁명의 수뇌부의 수반이라는 수령 옹호보위 ▶조선노동당과 북한정권의 보안사업 옹호보위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질서유지 업무 등을 수행한다. 북한경찰은 세계 각국 경찰의 기본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치안질서의 유지기능 보다 앞서,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령과 당(정권포함)을 옹호·보위하는 것을 제1차적 임무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경찰은 민생치안보다는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 북한경찰은 정치사업(당사업), 소방사업, 주민요해사업, 국토관리사업, 지진관리, 철도·지하철 운영관리, 교화사업(교도행정), 화폐발행, 공병업무 및 외화사업(교도행정), 화폐발행사업, 공병업무, 외화별이사업 등의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북한경찰의 위상:** 북한경찰기관인 인민보안성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행정부인 내각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경찰은 실제로 내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북한권력의 최고핵심 기관인 조선로동당과 국방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③ **북한경찰의 조직체계:** 북한경찰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경찰의 중앙조직인 인민보안성은 인민보안상(주상성 대장, 우리의 경찰청장), 10여명의 부상(副相), 독립적인 당조직인 정치국과 보위부 및 20여개 참모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인민보안성 본부의 참모부서는 감찰국, 산업감찰국, 예심국, 수사국, 작전국, 교화국, 호안국(우리의 생활안전+교통), 경비훈련국, 주민등록국, 통신국, 병기국, 재정국, 후방국(보급), 건설국, 자재관리국, 금강관리국(외화별이), 종합지휘실(상황실), 총무국, 대외사업국 등이 있다.

또한 독립처로는 외사처, 교육처, 운수처, 군의처(의무), 반항공처(전쟁대비), 경리처, 상표인쇄처(화폐발행) 등이 있다. 인민보안성 본부 산하의 독립부서로는 철도안전국, 지하철도관리국, 7총국(공병총국), 8총국(도로총국), 국토총국 등이 있다. 이외 인민보안성 직할부서로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공병대학, 압록강 체육단, 사격단, 화폐공장, 권총공장, 심사소, 검차대, 자동차수리소, 인민보안성 병원, 116기동대, 답사관리소, 기요연락소, 전자계산기연구소, 지진연구소, 경비대 등이 있다.

북한경찰의 지방조직은 직할시·도 **보안국**(保安局), 시·군(市郡)·구역 **보안서**(保安署), 리·동(里洞) **보안소**(保安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국에 12개의 보안국(우리의 지방경찰청), 200여개의 보안서(경찰서), 4,000여개의 분주소(지구대, 파출소) 등이 있다. 특히 북한에는 지방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대규모 공장, 노동자구, 대학 등에도 보안부나 보안소가 설치되어 있다. 시·군·구역 보안서에는 보안서장(경찰서장), 정치부장, 보위부장, 부부장(안전담당, 후방담당), 감찰과, 예심과, 수사과, 호안과(교통+생활안전), 주민등록과, 작전과, 경리과, 총무과(대열과), 반탐과(우리의 보안과), 2부(여행증명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경찰조직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인민보안성 정치국이다. 정치국은 당에서 직파한 조직으로 인민보안성 정치국장은 인민보안상과 같은 위상으로 대우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인민보안상을 능가하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북한경찰내 정치국 조직은 지방조직인 시도 보안국내 정치부, 보안서내 정치부 등으로 직할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④ **북한경찰의 계급구조:** 북한경찰의 계급은 현역 정규군인인 조선인민군과 같은 군사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 경찰은 **원수급**인 차수(인민보안상), **장령급**(우리의 장군급)으로 대장, 상장, 중장, 소장이, **좌관급**(우리의 영관급)으로 대좌, 상좌, 중좌, 소좌, **위관급**으로 대위, 상위, 중위, 소위, **하사관급**으로 특사(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병사급**으로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 등 **21개 계급**으로 분류된다. 인민보안성 본부의 국장과 시도 보안국장은 상장·중장이, 보안서장은 대좌급이, 보안소장은 소좌·중좌급이 맡고 있다. 통상 북한경찰은 전사에서 특무상사까지 하전사들을 비(非)간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인민보안성 산하 경비대(7총국, 8총국, 경비훈련국 등)에 근무한다. 또한 하사관급 중 복무연한을 넘겨 기술병과 부분에서 복무하는 보안원들을 지칭하는 초기(超期) 복무하사관제를 운용하고 있다. 초기 복무하사관은 초기하사, 초기중사, 초기상사, 초기특무상사로 분류하는데, 이들은 주로 통신, 운전, 소방, 화학, 기계 분야에 근무하며 이들의 계급장은 일반 하사관과 다르다.

⑤ **북한경찰의 인원규모** 북한경찰의 인원규모는 북한정권기관의 속성상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략 18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순수 인민보안원이 8만

명, 준(準)무장병력인 7총국, 8총국의 공병요원이 8만명, 경비훈련국 소속 경비요원이 2만명 등이다.

특히 인민보안원은 아니지만 인민보안성과 산하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민(노동자)은 12만명 정도인바, 이를 포함하면 실제 총인원 규모는 3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인민보안성 본부에는 3,000여명이 근무하고, 각 시도 보안국에는 2~3천 여명, 시·군·구역 보안서에는 약 4~8백명, 리·동 보안소에는 10~2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사민 포함). 여성경찰은 전체 보안원중 20% 미만이며 주로 교통보안원, 통신원, 부기원(경리업무), 주민등록원 등으로 활동한다.

북한경찰체제는 주체사상에 기반한 ‘우리식 사회주의의’체제와 김정일정권이 지속되는 한 향후에도 북한경찰의 기능과 조직성격 등 북한경찰의 기본 패러다임(Paradigm, 定向)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김정일정권이 선군정치노선에 입각한 군사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체제 유지의 근간중 한축인 북한경찰의 정치사회적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여 북한군과 함께 북한경찰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경찰은 북한경찰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북한지역 치안확보 방안 및 남북경찰통합방안 마련에도 실천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인 : 김인규 기획운영과장, 유동열 연구관
 편집위원 : 이상수, 김운영, 이동규, 권태형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285-2616 (경비) 61-5207
- e-mail: webmaster@psi.go.kr

독일 해외연구기관 방문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2008년 9월 22일부터 27일 까지 ‘해외연구기관 방문계획’의 일환으로 독일 한스-자이델재단(민첸소재)과 슈파이어대학(슈파이어소재)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연구소와 한스-자이델재단은 실질적 교류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내용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의 독일연수 프로그램 시행, 국제학술세미나 공동개최, 경찰대학 내 원어(독일어, 영어)강좌 개설, 연구자료 공유 등이다.

방문단은 슈파이어대학에서 개최한 ‘독일 행정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당 연구소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피차스 교수와 연구과제 관련 회의를 주관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김길배 치안정책연구소장, 이동규 연구관, 송명순 운영계장, 김시묵 경위가 참가했다.



「치안정책연구」 편집위원회 개최

2008년 10월 30일 연구소는 「치안정책연구 제 22호」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6명이 응모원고 13편에 대한 수록논문 선정 및 편집방향을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연구소에서는 외부 편집위원으로 양문승 원광대 교수, 조태제 한양대 교수, 이성용 계명대 교수, 신현기 한세대 교수, 임반석 청주대 교수, 이영남 관동대 교수 등을 위촉했다.

용역·위촉·책임연구과제 발표회 개최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9-10월 6회에 걸쳐 전 연구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 용역·위촉연구과제 중간 발표 및 책임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일자	연구과제명	발표자
9.9	경찰단계에 있어서 성폭력사건 수사절차개선에 관한 연구	이승준
9.18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경찰의 치안역할 정립방안	김원중
9.25	어린이 실종사건의 효과적 처리방안	이윤호
10.9	경찰에서의 고소고발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연구	정지운
10.15	우리나라 교통안전시설 발전방향 연구	김진태
10.29	청소년유해업소 접촉실태와 경찰의 단속활동 방향	유지용

◆ 유동열 연구관(안보대책실)은 2008년 10월 9일 전여옥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한 ‘국가안보수사기관 정상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초청되어 제1주제인 ‘최근 북한 및 좌파권의 안보위해실태’에 대해 발표하였다.

◆ 김윤영 연구관(안보대책실)이 <치안정책연구 제 21호>에 발표한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동아일보 ‘외국인 범죄 최다’라는 제하의 기사에 인용 보도되었다.

◆ 정지운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경비업법 개론」(한국학술정보)이란 저서를 발간하였다. 동 책은 경비업의 이론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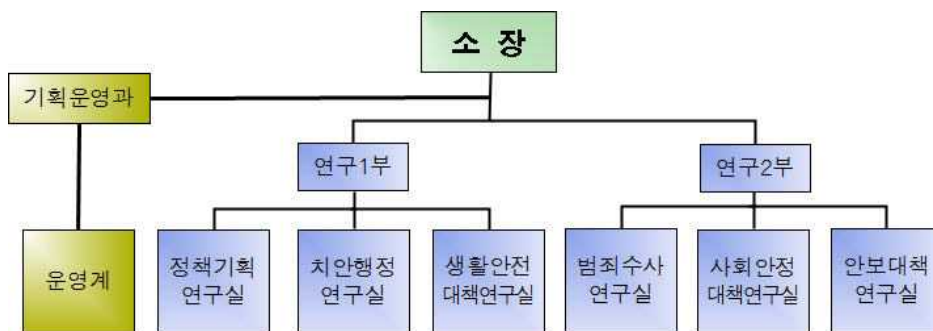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애정어린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서	담당 업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치안정책개발 및 기획에 관한 연구 총무행정 및 제도개선 등 치안행정 발전에 관한 연구 경찰의 보수·후생 등 복지관련 사항 연구
치안행정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찰 정보통신의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경찰의 대국민 홍보방안 연구 경찰교통업무 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 관련 범죄연구 경찰 외근업무,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대책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사회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정보활동 및 국내사회안전대책연구 경찰경비활동 및 대테러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분석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 보안에 관한 사항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치안정책 관련 연구수요 조사◆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위 연구분야와 관련된 연구수요를 연중 접수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치안행정에 관한 이론 정립 및 다양하고 심도있는 치안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를 희망하는 주제를 자유로이 선정, 연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 또는 E-mail(webmaster@psi.go.kr)을 이용하여 치안정책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